

해수부·해양청, 폐어구 발생 예방 위한 합동 점검 나선다

-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3주간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6월 8일(월)부터 6월 26일(금)까지 3주간 전국 주요 항·포구 및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시·도 및 시·군·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제 등 어구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상황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4월 23일부터 ▲어업인이 어구의 사용·보관·폐기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어구관리기록제’, ▲조업 중 어구가 유실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폐어구는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라며, “현장 점검과 예방 중심의 홍보를 병행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기획과	책임자	과 장	고경만 (051-773-5603)
		담당자	사무관	하승우 (051-773-5604)
담당 부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오염예방과	책임자	과 장	이종남 (032-835-2097)
		담당자	사무관	장명길 (032-835-2197)

□ 목적

- 어구 생산·판매 업체 및 어구·부표 사용 어업인에 대한 관련 제도* 이행 현황 점검·단속 및 어구 관리 강화 인식 제고

* (수산업법)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 어구신고제, 불법어구 즉시철거제 등 (어장관리법)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 금지

□ 점검·단속 개요

- (참여 기관) 해수부(3개 어업관리단), 해경청(5개 지방해양경찰청, 21개 해양경찰서), 지방정부(사도, 사·군·구), 한국수산자원공단(어구보증금센터), 수협
- (점검 기간) '26. 6. 8(월). ~ 6. 26.(금)(3주간)
* (사전홍보) '26.6.1.(월) ~ 6.5.(금) (1주간) / 보도자료, 현수막, 반상회 자료, 수협홍보 등
- (점검 대상)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선구점 포함) 업체, 양식장
- (점검 내용)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이행, 스티로폼 부표 사용 여부, 신규 어구관리제도 이행 여부 등
- (점검반 구성)

해경서	어업관리단	지방정부	한국수산자원공단	수 협
경비함정, 형기정	어업감독공무원 어업지도선	업무 담당자 어업감독공무원	담당자	담당자

□ 점검·단속 내용

대상	주요 점검 내용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실명제 이행 여부 ▶ 어구관리기록부 비치·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여부(현장계도) ▶ 어구·부표보증금제 대상 어구 사용여부
어구 생산·판매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판매 신고제 이행 여부(신고증, 기록관리) ▶ 어구보증금제 이행 대상(통발, 자방, 양식장 부표, 장어통발) 생산·판매(수입) 업체 (보증금 표식 부착 여부 어구 생산·수입 점검)
양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된 스티로폼 부표의 설치 및 사용 여부 ▶ 폐부표의 적법 처리, 어구·부표 보증금 간접 표식 구매